

『구미시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』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2. 제안이유

- 대중교통소외지역에 행복택시를 운행하여 해당마을 주민들의 이동권을 확보하고 이를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주민 교통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함

3. 주요내용

- 행복택시 운행대상마을 선정기준 및 방법(안 제3조)
- 행복택시 이용대상, 마을대표자 선정(안 제4조 ~ 제5조)
- 사업자 선정, 운행방법, 이용방법(안 제6조 ~ 제8조)
- 비용의 신청, 비용의 결정(안 제9조 ~ 제10조)
- 사후관리, 지원의 중단(안 제11조 ~ 제12조)
- 사무위임(안 제13조)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, 「국가균형발전 특별법」, 「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」
- 예산조치 : '18년 예산 1억원 반영됨(국비 5천만원, 시비 5천만원)
- 합 의 : 감사담당관, 기획예산담당관과 합의되었음
- 기 타 : 해당사항 없음

5. 검토의견

- 본 「구미시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」은
 - 교통접근성이 취약한 마을에 행복택시를 운행하여 주민들의 이동권을 확보하고 행복택시 운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여 교통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함이나, 제도 정착을 위해서는 읍·면간, 오지간의 운행 택시 확보가 형평성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됨.